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69 발의연월일: 2020. 10. 26.

발 의 자: 추경호・서일준・金炳旭

송언석 · 성일종 · 김정재

김희국 • 윤두현 • 김예지

정희용 · 홍문표 · 이명수

권영세 의원(13인)

제안이유

2020년 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인정보처리자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를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법률 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의형태로 단순 이식하는 데에 그쳐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각종 의무규정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형태로 남게 되었음.

또한, 종전 법률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각종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으로써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보다는 위반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개정 법률에서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존속되어 개인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할 과징금,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를 산정할때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34조의2제3항제5호, 제3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6항 신설).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명백하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함(안 제15조제1항제6호).
- 다.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요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무 규정과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안 제18조, 제19조의2 신설, 제34조의2,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10까지 및 제39조의15 삭제, 제71조제4호의5ㆍ제4호의6 및 제75조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 삭제 등).
- 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형 벌의 형량을 하향 조정함(안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 삭제,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제8호 중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를 "제28조의6 및 제34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자율규제단체 및 자율규약) ① 보호위원회는 제13조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구 성된 기관·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 행하는 기관·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규제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보호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약을 작성할 때 해당 단체의 구성원·회원 등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자율규약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권고 또는 고 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

여야 한다.

- 1.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 2.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의 내용을 고발하는 경우
- 3.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기준 •절차, 자율규약의 작성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를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를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명백히 정보주체"를 "정보주체"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 중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출처"를 "출처 및 수집 근거"로 하고,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 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를 "(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4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28조의7 중 "제20조"를 "제19조의2, 제20조"로,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를 "제37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출"을 "분실·도난·유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유출"을 각각 "분실·도난·유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출"을 "분실·도난·유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출"을 "분실·도난·유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을 "개인정보 보유량,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로 하고,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2.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 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 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5. 자율규약의 준수 여부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확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를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로 한다.

제3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율규약의 준수 여부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

증 여부

제39조의3을 삭제하고, 제5장에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11을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11)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한다)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4"를 "제34조"로 한다.

제39조의12를 제39조의5로 한다.

제39조의13을 제39조의6으로 하고, 제39조의6(종전의 제39조의13) 중 "제39조의12"를 "제39조의5"로 한다.

제39조의14 및 제39조의15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중 "징계권고"를 "징계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현황 및 그 불이행 사유 등을 감사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 시정조치"로 한다.

제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 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5.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를 제공받은 자
- 6.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 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 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3.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제2항 본문 중 "제73조까지"를 "제73조까지 및 제73조의2"로 한

다.

제74조의2 전단 중 "제73조까지"를 "제73조까지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의8을 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종전의 제12호의8) 중 "제39조의12제4항"을 "제39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9조의9제1항"을 "제3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의11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의11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의12제2항"을 "제39조의5제2항"으로, "제39조의12제3항"을 "같은 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⑥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의 자율규약 준수 여부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 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바목 중 "제72조 또는 제73조"를 "제72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
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	
결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	8. <u>제28</u> 조의6 및 제34조의2
<u>조의15</u> 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에 관한 사항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2(자율규제단체 및 자율
	<u>규약) ① 보호위원회는 제13조</u>
	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육
	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
	<u>보처리자로 구성된 기관·단체</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
	관·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
	<u>정할 수 있다.</u>
	② 자율규제단체는 해당 단체
	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u>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u>

- 다)을 작성하고, 보호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자율규제단체는 자 율규약을 작성할 때 해당 단체 의 구성원·회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자율규약의 신고가 접수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 다.
- 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권고 또 는 고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의 자율규약 준수 여 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 우
- 2. 제6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
 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의 내용을 고발하는
 경우
- 3.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

- 1. ~ 5. (생략)

②·③ (생 략)

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 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지 정 기준・절차, 자율규약의 작 성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외한다)---------정보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후단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역	긴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여	거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	사
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여	إذ
하 같다)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
 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 ④ (생 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 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 대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제17소(개인성보의 제공) (1)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u>제5호</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①
제15조제1항-
<u> 41135741.8</u>
②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경우 제1호 · 제2호 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 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2. (생략)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u>명백히 정보</u> <u>주체</u>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	에5호부터	제()호까지
의	경우는	공공기관	의	경우로
한 7	정한다.			

1.	• 2.	(현행과	· 같음)	
3.				
			<u>정보주</u>	<u>स्रो</u>
				_

4. ~ 9. (생 략) ③ ~ ⑤ (생 략) <u><신 설></u>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 고지) ① ------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

4.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 중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 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집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 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정보주 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 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 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신 설>

2. • 3. (생략)

① ~ ④ (생 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생 략) <신 설> ______

- 1. ----<u>출처 및 수</u> 집 근거
- 2. 제15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 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 익
-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현 행과 같음)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3인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 이 의료 정하는 사항을 전자 우편 등 대통령 이 이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알릴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② ~ ④ (생 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 ⑥ (생 략) <신 설>

- ① 제1항부터 <u>제6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지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 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 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 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 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

<u> </u>
<u>니하다.</u>
$\underline{3} \sim \underline{5}$ (현행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와 같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
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
를 사용하여야 한다.
<u>⑧</u> <u>제7항</u>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생 략)
 -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제34조의2제3항</u> <u>부터 제5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
 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u>이하 "개인성</u>
보취급자"라 한다)를 최소한으
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현행과 같
<u>♥</u>)
②
<u>제34조의2제5항부</u>
<u>터 제9항까지</u>
<u>.</u>
제28조의7(적용범위)
제19조의2, 제20조
제37조까지
<u>.</u>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u>분실·도난·유출</u>
<u>다만, 정보주체</u>
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 5. (생략)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가 <u>유출</u>된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 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u>수 있다.</u>
1. <u>분실·도난·유출</u>
2. <u>분실・도난・유출</u>
3. <u>분실·도난·유출</u>
4.•5. (현행과 같음)
②
<u>분실·도난·유출</u>
③
<u>분실 • 도난 • 유출</u>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 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인정보 보유량,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 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 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 집한 경우

--. <단서 삭제>

2.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조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한 경우
-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 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위반한 경우
- 6.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 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 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하다.
-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 력 정도
-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 | 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 호의 정도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 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 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 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 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③</u>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4.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신 설>

<u>3.</u> (생 략) <신 설>

③ (생략)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u><신 설></u>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자율규약의 준수 여부와 제3
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 인증 여부
<u>6.</u>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
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
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u>⑥</u>
<u>제5항</u>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⑤ (생략)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 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절차에 따라 대 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생 략)
 -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
산금을 지	급하여	야 하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u>공제한 나머지 금</u>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8. (생 략)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

- 1. (현행과 같음)
- 1의2.자율규약의 준수 여부와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 여부
- 2. ~ 8. (현행과 같음) <삭 제>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 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 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 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 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
 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 <삭 제> 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 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 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 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 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 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
- 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삭 제> 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 <삭 제> 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 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 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 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삭 제>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제3 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 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

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 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 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 <삭 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

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 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 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 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 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은 삭제 ·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삭 제>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9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 · 신 7
- 3. (생략)
- ② ~ ④ (생 략)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17조제 1항에 따라 이용자(「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이라 한다)로서-----

1. (현행 제39조의11제1항제1호 와 같음)

- 2. 제34조----
- 3. (현행 제39조의11제1항제3호 와 같음)
- ② ~ ④ (현행 제39조의11 제 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 제39조의5(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의 보호) (생략)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 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 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 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 · 제9호 · 제12호 및 제14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 자"로 본다.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삭 제>

	보호)	(현 행	제39	소의12와	같
	음)				
ス]39조의	<u>6</u> (상호	주의)	<u>제39조의</u>	<u>5</u>
	<삭	제>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 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 우
-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 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 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 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5조(고발 및 <u>징계권고</u>)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7조(연차보고)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생략)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u>실태</u>
 조사 등의 결과
- 3. ~ 6. (생 략)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제65조(고발	및	<u>징계권고</u>	<u>등</u>)	1
~ ③ (형형	했과	같음)		

-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이행하 지 않은 기관의 현황 및 그 불 이행 사유 등을 감사원에 통보 할 수 있다.
- 제67조(연차보고) ① (현행과 같음)

(2)	 	 	

- 1. (현행과 같음)
- 2. -----<u>실</u>태 조사·시정조치-----
- 3. ~ 6.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 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 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 · 제2항(제39조 <삭 제>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 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자
-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 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 | <삭 제> 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 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

<삭 제>

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 공받은 자

4의3.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 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한 자

4의4. 제36조제2항(제27조에 따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 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 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 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 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 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의5.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6. 제39조의3제4항(제39조의 | <삭 제> 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삭 제>

<삭 제>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 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자

5. • 6. (생략)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 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신 설>

<u>1.</u>	· <u>2.</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			

-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 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 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3. (생략)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3조(벌칙) 제25조제5항을 위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은 자

-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 감정보를 처리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 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5.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 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 은 자
- 6.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7. 8.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 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 능을 사용한-----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 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제1항(제39조의14 <삭 제>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 <삭 제> 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한 자
-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 | <삭 제> 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신 설>

- 제7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제74조(양벌규정) ① (생 략)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 터 <u>제73조까지</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자

- 2.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 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3.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 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한 자
-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현행과 같음)

(2)
<u>제73조까지 및 제73조의2</u>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 부터 <u>제73조까지</u>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 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 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 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u>제73조까지 및 제73조의2</u> -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제39조의6(제3 <삭 제> 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 12. (생략)

12의2. 제39조의3제3항(제39조 <삭 제>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 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제<u>39조의4제1항(제39조</u>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 용자 · 보호위원회 및 전문기 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 는 신고한 자

12의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 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자

12의5. 제39조의7제2항(제39조 <삭 제> 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 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

4의2.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한 자

- 12의6.제39조의7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삭 제>

<u><삭</u> 제>

아니한 자

- 2. <u>제39조의11제1항</u>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한 자
- 3. 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 · 보관한 자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21조제3항</u>을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 리하지 아니한 자
- 2. ~ 11. (생략)
- ⑤ (생략)

<신 설>

2. <u>제39</u> 조의4제1항
3. <u>제39</u> 조의 <u>5제2항</u>
5. <u>제35로막5제2 8</u> 같은 조 제3항
4)
,
1. <u>제21조제4항</u>
2. ~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 때 게이저ㅂ처리가 따느 저
<u>할 때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u>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
규약 준수 여부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
를 고려하여야 한다.